

제2편 학 칙	학 칙	제정일자	1979.03.01
		최종개정일자	2020.06.11
		관리부서	교무처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청암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전라남도 순천시 녹색로 1641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020학년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 연한	모 집 정 원			학 과 명	수업 연한	모 집 정 원			
		주	야	계			주	야	계	
간호학과	4년	200	-	200	유아교육과	3년	50	-	50	
안경광학과	3년	45	-	45	호텔항공서비스과	2년	45	-	45	
물리치료과	3년	40	-	40	세무회계과	2년	40	-	40	
응급구조과	3년	40	-	40	부동산과	2년	-	35	35	
치위생과	3년	50	-	50	사회복지과	2년	60	40	100	
병원의료정보과	3년	40	-	40	군사학과	2년	35	-	35	
뷰티미용과	2년	65	-	65	경찰경호무도과	2년	30	-	30	
재활스포츠과	2년	35	-	35	컴퓨터정보보안과	2년	35	-	35	
호텔 조리 영양 학부	호텔외식 조리전공	2년	60	-	60	전기제어과	2년	41	-	41
						소방안전 관리과	2년	소방안전 관리전공	35	-
	화공산업 안전전공							30	-	30
	계						976	75	1,051	

###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9.12.16>

학 과	산업체 경력 유무	주/야	수업연한	모집정원(명)	비 고
간호학과	무	야	1	40	
호텔조리영양학부	유	야	2	10	
세무회계학과	유	야	2	10	
컴퓨터정보보호안과	유	야	2	10	
전기제어과	유	야	2	20	
			계	90	

②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 제 1항에 의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5. 08. 17> <개정 2015. 12. 29 >

**제5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고등교육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4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반으로 한다. 다만, 전·편입자, 재입학자 및 복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③ 전 1,2항의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제 또는 총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2학기제는 1학기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학기에 성적반영이 어려운 경우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하계 현장실습은 다음 2학기로, 12월1일부터 2월말까지의 동계 현장실습은 다음 1학기로 산입 할 수 있다. <개정2019.08.26>

③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졸업 학기에 현장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을 실시하는 학과는 2학기를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

습학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④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 수업 또는 실습학기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⑤삭제

⑥다 학기제를 실시하는 경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6.07.20.>

**제9조의 2(집중이수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블록수업, 집중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3.25.>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계방학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4월 1일
4. 일요일
5. 국정 공휴일

②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휴업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②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5.12.29>

**제14조의2(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07.20>

②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20>

**제15조(입학허가)** ①입학허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07.20>

**제15조의 2(이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은 가질 수 없다.

**제15조의 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5. 03. 31>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03. 31>

**제16조(편입학)** ①전문대학,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복무 중 폐과된 과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③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2.13>

**제16조의2(전과)** ①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2년제 과정일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 3년제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까지 허용 할 수 있다.

②전과대상 학과의 범위는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개정 2018.09.19.>

③전과는 전입학과별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보건계열 학과 중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8.09.19.>

④삭제<개정 2018.09.19.>

⑤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⑥삭제<개정 2018.09.19.>

⑦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주·야간 모집단위별 전과를 불허한다.<개정 2018.09.19.>

**제16조의3(전과의 제한)** 삭제

**제17조(재입학)** ①본 대학교의 재적하였던 자로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21조 6항, 8항에 의해 제적된 자는 교무위원회 결정 없이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2016.07.20>

②재입학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을 때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5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비유학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⑤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⑥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유급 또는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성폭력(폭행, 추행, 희롱)을 행한 자
9. 재학 중(재적생 포함) 사망한 자

## 제 6 장 교 과 및 수 업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와 전문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 및 일반선택교과10~30%,(다만, 교양 10%이상) 전문교과 및 교직 교과 70~90%로 하고, 전문교과의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 전문교과는 전공기초, 필수, 선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8.26.>

③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한다.

④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교, 학과별 행사,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수업의 효율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사이버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교육과정의 연계 및 협약학과 운영)**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국내·외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연계 및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별도교육과정 운영)**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월 학기 입학, 산업체위탁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4(장애학생의 학점등록)**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학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 5(계약학과에 의한 학과설치)** ①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계약 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9.03.21.>

**제22조의 6(융합전공제)** 둘 이상의 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 간 연계·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3.25.>

**제23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교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6.07.20>

**제23조의 2(시간제 등록생 선발)**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총장은 시간제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 ③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하며, 학과 또는 계열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시간제 등록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 이내로 하며, 학년당 총20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⑥기타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3(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설치·운영)**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 경력 유·무의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취득학점은 전문대학 이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대학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⑥한 학기 이수 최소학점은 2년 과정은 15학점, 1년 과정은 10학점으로 한다.<개정2018.12.13.>
- 제23조의 4(학점 은행제 설치·운영)** ①총장은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 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학점은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5(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 할 수 있다.

-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6(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 ②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약정에 의거 상호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3조의 7(국내·외 인턴십 및 현장실습 과정운영)** ①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인턴십 및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국고 예산지원 국외 현장실습의 경우 20학점 내외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의 8(학사제도개선사업 6Q+1F 특별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부장관** 지정에 관한 내부 규칙에 의거 효율적인 학사제도개선사업을 위하여 6Q+1F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6.07.00개정>

② 6Q+1F 특별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9** <삭제 2014. 10. 20>

**제23조의 10(쿼터제 교육과정 운영)** ①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쿼터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11(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창업 강좌 개설 및 교육, 창업대체 학점 인정, 창업학점 교류제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창업대체 학점 인정의 경우 한 학기당 4학점이하, 연 8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12(교육과정 운영)** ①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맞는 역량교육과정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5. 01. 29> <개정 2019. 08. 26>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01. 29>

**제23조의 13(진로지도 및 학습의욕 고취 프로그램 운영)** ①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과 진로지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5. 01. 29>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01. 29>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학과는 75학점, 3년제 학과는 115학점, 4년제 간호학과는 13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6.11.>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제22조 4항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교 학과별 행사,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점, 방법, 기간,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유연학사제도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20.06.11.>

**제25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3:00 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개시 시간은 산업체의 근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③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운영 방법 및 교수시간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 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7조(평가지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공무, 질병, 졸업예정 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결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8>

③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주기적으로 교과목 단위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및 학과단위 직무능력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 08. 17>

④공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

**제28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와 졸업 예정 학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이하	0
P 또는 N		불계

- ③추가시험 성적은 A+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7.20>
-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⑥정원 외 입학자중 전문대학 졸업자와 학사학위 소지자의 교양과목 성적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이수한 경우에는 P,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N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P로 처리된 경우에는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하되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제29조(학점인정)**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D°등급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 ②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삭제
- ④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기개시 전 해당학기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제29조의 2(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①국내·외 대학 간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국내·외 타 대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④대학 입학 전 본 대학교 개설 교과목을 선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 3(군복무 중 학점인정)** ①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 한다.

- ②제1항에 의거한 취득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1. 29>

③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한다.

**제29조의4(학습경험 학점인정)** ①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학점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의 범위에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심의회 운영구성과 운영 및 학습경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25>

**제29조의5(온라인강좌 학점인정)**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나 본 대학교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운영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25>

**제29조의6(원격교육강좌 학점인정)** ①원격교육(이러닝)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기관에서 원격교육(이러닝) 콘텐츠를 공동 개발한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타 교육기관과 본 대학이 공동 개발하여 운영되는 원격교육(이러닝)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본 대학에서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원격교육(이러닝)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학점인정에 관한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25.>

③국가적 재난 및 기타 부득이한 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관련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4.22.>

**제29조의7(복수학위 취득)** ①청암대학교 학생은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교(이하‘교류대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상호 인정받아, 청암대학교 및 교류대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양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②교류대학교 학생이 청암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청암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 한 때에는 청암대학교의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③기타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3.25>

**제30조(진급인원)** 2학년, 3학년 및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2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졸업 및 수료)**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2년제 4개 학기 이상, 3년제 6개 학기 이상, 4년제 8개 학기 이상)하고 제24조 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의 경우 전문학사는 <별표 1-1 전문학사 학위>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별표 3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 학사학위는 <별표 1-2의 학사학위>에 의거 <별지 4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6.11.>

②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3. 31> <개정 2020.06.11.>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4년제 35학점)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4년제 65학점)
3. 3학년 수료 : 115학점 이상(4년제 100학점)
4. 4학년 수료 : 135학점 이상

④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⑤제23조의 4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수여 요건에 충족된 자에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제23조의 6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⑦제23조의 3 제3항에 의거한 교육과정 이수자 에게는 별지 3서식에 의한 별표 3에 해당 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33조의2(졸업유보)** ①졸업요건이 충족된 자가 본인의 성적 재이수, 자격취득, 교직과목 이수의 사유로 학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하여 2개 학기에 한하여 졸업유보를 할 수 있다.

②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 3(학위 수여의 취소)** 총장은 제33조에 의거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01. 29>

**제34조(유급)** ①소정의 학점 미달 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 할 수 있다.

②세 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한다.

## 제 8 장 학 생 활 동

**제35조(학생회 조직)**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휴학자는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신분을 상실한다.

**제36조(학생회비)** 학생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학생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생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금지)** ①본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회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시위, 성토,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9조(학생지도)** ①학과(부)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본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 단체의 건전한 과외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학생을 책임자로 둘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연대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07.20>

제39조2(인권침해 발생 시 처벌) 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지도교수 및 학생책임자와 인권침해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7.20>

**제4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을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1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학생생활운영위

원회)가 지도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차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제 9 장 규 율 과 상 별

**제43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교양을 높이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4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생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7조(성희롱 예방)**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0 장 등 록 금 <개정 2015. 08. 17>

**제48조(등록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 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8. 17>

③납부한 수업료 등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08. 17>

**제4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으로 구

성하며, 교직원(법인 추천인사 포함)·학생·관련전문가(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부모 및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4명
2. 학 생 3명
3. 관련전문가 1명
4. 동문, 학부모 중 1명

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3 (등록금심의위원회 교내위원의 위촉)**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내위원은 대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9 >

**제48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①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8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6(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리적 등록금의 산정 및 책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8조의7(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서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대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2015. 12. 29>

**제48조의8(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10(회의록 공개)**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 조달이 어려워 납입이 극히 어려운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11 장 장 학 금

**제50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생생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2 장 대학평의위원회·교수회·교무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정 2015.12.29>

**제51조(구성)** ①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위원회,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03. 31> <개정 2015. 12. 29 >

② <삭제 2015. 03. 31>

**제52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의 부재 시에는 부총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부총장의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03. 31>

② <삭제 2015. 03. 3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제4호는 의결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03. 31>

1. 삭제
2.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규정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03. 31>
5. 학사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03. 31>

**제52조의 2(대학평의위원회)** ① 총장은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대학교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② 대학평의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03. 31>
- ③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03. 31>
1. 교원 5명 : 계열별 전체 교수 합의로 2배수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 간호 4명, 보건/인문/자연 각 2명, 공학 1명
  2. 직원 3명 : 남·여 직원 합의로 2배수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 남직원 4명, 여직원 2명
  3. 학생 1명 : 총학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2명 : 총장이 추천하고 임명.

## 제 13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5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심의) 삭제**

**제56조(심의 및 공포)** ①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57조(공포절차 및 공포) 삭제**

**제58조(교직원)** ①본 대학교에는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등의 교원과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5.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직제)** ①본 대학교에는 기획처, 교무처, 입학학생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두며, 그 외에 기타 필요한 부서 및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03. 31> <개정 2015. 08. 17>

<개정 2016.07.20.><개정 2018.12.13.>

②제1항의 직제와 관련된 하부조직에 관한 사무분장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03. 31> <개정 2015. 08. 17>

③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 01. 29> <개정 2015. 08. 17>

④ <삭제 2015. 08. 17 >

⑤대학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⑥제1항의 직제와는 별도로 대학교에 산학협력단과 혁신지원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08. 26>

⑦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⑧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60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을 둔다.

①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삭제
2. 신문방송국<개정 2016.07.24>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도서관<개정 2018.07.24>
  20. 삭제
  21. 국제교류원 <개정 2015. 08. 17>
  22. <삭제 2015. 12. >
  23. <삭제 2015. 08. 17>
  24. 학생상담센터 <개정 2017. 04. 03.> <개정 2017. 04. 24.>
  25. 연합봉사단
  26. 예비군중대
  27. <개정 2015. 08. 17> <삭제 2015. 12. >
  28. <개정 2016.07.20>
  29. <삭제 2015. 08. 17>
  - ②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15. 01. 29>
    1. 평생교육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영포연수원
    8. 삭제
    9. 청암학숙관
    10. 건강복지관 <신설 2015. 01. 27>
  - ③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④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소를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5. 01. 29>
    1. 교책연구소 : 제일코리안연구소
    2. 부설연구소 : 간호학연구소, 자산정보연구소, 남도식문화연구소, 시광학연구소, 전기시스  
탐연구소
    3. 교설연구소 : 발건강교육연구센터, 관광교육원, 응급의료교육원
- 제60조의2(학교기업 설치)**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 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12.13.>
- ②삭제
  - ③삭제
  - ④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다.<2018.12.13.>

⑤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의3(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은 총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②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의 4(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교직원의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5 장 보 칙

**제6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산업체위탁교육)** ①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자체평가)** ①총장은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교 공시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자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①총장은 본 대학교 장애 학생의 교육복지 및 실제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정 예산배정
2. 장애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 수립

3.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시설의 점검과 교수-학습지원 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미비사항 개선

②기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순천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83학년도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 제32조는 198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 어업과, 기관과, 향해과 및 수·해양계열 통신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와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순천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순천청암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 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이 연장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할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 받는다. 다만,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된 학과에 재적 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복학생의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입학 당시 학과명	변경 학과명
경영정보학부, 물류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국제관광과	호텔경영과
세무회계정보과, 전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세무공무원양성과	세무회계과
사회체육과, 레저스포츠과	생활체육과
지형정보시스템과	GIS과
초고속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IT교육과
광고홍보과, 테크노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	디자인과
전기설비과, 전기전자과	디지털전기통신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부동산경제과
사무자동화과, 전산정보처리과,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과,	멀티미디어과

4.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휴학 중인 자가 복학 할 당시 폐과된 학과에 재적 중일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간호 및 보건계열,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타 학과로 전과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된 학과에 재적 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복학생의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입학당시 학과명	변경 학과명
경영정보학부, 물류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국제관광과	호텔경영과
세무회계정보과, 전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세무공무원양성과	세무회계과
노인보건복지과	노인요양복지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체육과, 레저스포츠과	생활체육과
지형정보시스템과	GIS과
초고속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전기전자과, 디지털통신과	IT교육과
광고홍보과, 테크노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 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호텔외식과, 호텔외식산업과, 관광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부동산경제과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 전산정보처리과,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과, 멀티미디어과	컴퓨터정보과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된 학과에 재적 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복학생의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1 전문학사 학위>

학 과 명	학 위 명	학 과 명	학 위 명
컴퓨터정보과	공업전문학사	노인보건복지과	복지전문학사
인테리어디자인과	공업전문학사	사회복지과	복지전문학사
IT과	공업전문학사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전문학사
간호과	간호전문학사	호텔경영과	경영전문학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전문학사	경찰경호과	행정전문학사
응급구조과	보건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전문학사
안경광학과	보건전문학사	부동산과	경영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전문학사	복지경영과	복지전문학사
피부미용과	미용전문학사	물류패키징과	공업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조리전문학사	전문사관과	행정전문학사
병원의료정보과	보건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광고홍보과	디자인전문학사

사회복지경영과(야)	복지전문학사	-	-
------------	--------	---	---

<별표 1-2 학사 학위>

학과명	학위명	비고
간호학과	간호학사	수업연한 4년제

<별표 2 학과명칭 변경>

입학당시 학과명	변경 학과명
환경관리과, 지구환경시스템과	보건환경위생과
경영정보학부, 물류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국제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세무회계정보과, 전산세무회계과, 세무공무원양성과	세무회계과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과
지형정보시스템과, GIS과	지리정보관리과
초고속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IT교육과
광고홍보과, 테크노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 광고홍보과, 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전기설비과, 전기전자과	디지털전기통신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부동산경제과	부동산과
사무자동화과, 전산정보처리과, 컴퓨터정보학부, 멀티미디어과	컴퓨터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애견미용관리과	애완동물관리과
호텔외식산업과, 호텔외식과, 관광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포장과, 포장물류과	물류패키징과
사이버경찰행정과	경찰경호비서과
노인보건복지과	노인요양복지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병원의료공학과	병원의료정보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수업연한,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학칙에 준한다.

②중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제 과정으로의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2년제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이 폐 과목 되었을 경우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중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 하는 경우는 해당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교과목이 중복 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폐과된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2008 학과명칭 변경〉

입학당시 학과명	변경 학과명
부동산경제과	부동산과
포장물류과	물류패키징과
노인요양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문화상품디자인과	광고홍보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과
부사관과	전문사관과

〈별표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학 과 명	학 위 명
간호학과	간호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세무회계학과	경영학사
컴퓨터정보학과	공학사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건축학사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사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9학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3. (폐과에 따른 제적자 재입학 경과조치) ①대학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폐과 학과의 제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유사 및 동일 계열 내 학과에 여석과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한다. 다만,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가 없을 경우 간호·보건 계열 학과 중 국가고시를 응시 하는 학과 및 교직이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 할 수도 있다.
- ②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로 재입학 하는 경우 전공필수 과목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입학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교과목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폐과된 학과의 제적 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는다.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 ④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제적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폐과에 따른 휴학자 전과 경과조치 ) ① 휴학자로서 복학신청 시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과 학과의 여석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 학과의 취득 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 한다.
- ③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5. (졸업생 학위증 및 수료증 기관장 명칭 변경) ①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학사 학위증 기관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하여 발급한다.
- ②2008학년도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탈락 등의 사유로 2008학년도 이후에 졸업 하는자의 학위증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 ③2008학년도 수료자부터 수료증 기관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발급하며, 이 규정 적용 당시부터 수료증명서 신청자도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별표 2009학년도 학과명칭 변경>

입학당시 학과	변경 학과
경찰경호비서과	경찰경호학과
IT교육과	IT학과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폐과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폐과된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한 교명변경 전 졸업생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은 변경된 교명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1학년도 학과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피부미용과	향장피부미용과	
물류패키징과	물류유통정보과	
IT과	신재생 전기제어과	
레저스포츠과	스포츠건강관리과	

3. (폐과에 따른 제적자 재입학 경과조치) ①폐과로 인한 학과의 제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여석과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한다. 다만,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가 없을 경우 간호·보건 계열 학과 중 국가고시를 응시 하는 학과 및 교직과목이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도 있다.  
②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폐과된 학과의 제적 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는다.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④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제적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1학년도 폐과 학과>

학 과	비 고
호텔경영과(야)	

4. (폐과에 따른 휴학자 전과 경과조치) ①휴학자로서 복학신청 시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과 학과의 여석이 있어야 한다.
- ②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 학과의 취득 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10일 부터 시행 한다.
-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3년제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수업연한,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입학당시의 학칙에 준한다.
 

②중전의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4년제 과정으로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다.

③중전의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 하는 경우는 해당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교과목이 중복 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31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3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3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호텔항공관광과	문화관광과	
	호텔경영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재활스포츠과	

3. (폐과에 따른 재입학 경과조치) ① 폐과로 인한 학과의 제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여석과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한다. 다만,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가 없을 경우 간호·보건 계열 학과 중 국가고시를 응시 하는 학과 및 교직과목이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도 있다.
- ② 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폐과된 학과의 제적 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는다.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 ④ 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제적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3학년도 폐과 학과〉

폐과 학과	비고
부동산과(주간)	
사회복지과(야간)	
복지경영과	
물류유통정보과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인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후 폐과 되어 그 학과로 재인가 받았을 경우 폐과 당시 재적생은 재인가 학과로 복학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재적생의 폐과 당시 취득한 학점은 재인가에 따른 신설된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2011학년도 학과명칭 및 신설학과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 명칭

학과명	학위명	비고
향장피부미용과	미용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물류유통정보과	공업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신재생전기제어과	공업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스포츠건강관리과	체육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전문학사	신설학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2014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폐과 학과

학 과	비고
컴퓨터정보학과	산업체 경력 없는 경우

〈별표 2〉 2013학년도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 명칭

학과명	학위명	비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호텔경영과	경영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건축디자인과	공업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재활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학과명칭 변경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0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4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2015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호텔경영과	호텔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3.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일 계열 내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가 없을 경우 간호·보건 계열 학과 중 국가고시를 응시 하는 학과 및 교직과목 이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도 있다.  
 ②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변경 전 학과의 취득한 이수학점은 변경 된 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폐과된 학과의 제적 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지 않는다.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④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제적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5학년도 폐과 학과〉

폐과 학과	비고
건축디자인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2016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경찰경호과	무도보안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017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향장피부미용과	뷰티미용과	
호텔문화관광과	호텔항공서비스과	
세무회계과, 부동산과	세무회계부동산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정보보안과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경과조치)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7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8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영양과	
신재생전기제어과	전기제어과	

3.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일 계열 내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유사 및 동일계열 내 학과가 없을 경우 간호·보건 계열 학과 중 국가고시를 응시 하는 학과 및 교직과목 이수 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도 있다.

②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변경 전 학과의 취득한 이수학점은 변경 된 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폐과된 학과의 제적 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지 않는다.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④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제적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8학년도 폐과 학과〉

폐과 학과	비고
무도보안과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과대상자 경과조치) 2018학년도 2학기 전과신청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2018학년도 호텔조리영양과 식품영양조리전공과 2019학년도 호텔조리영양과 조리영양전공은 식품영양학전공자로 본다.

3.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변경 전 학과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20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호텔조리영양과 · 호텔외식조리전공 · 조리영양전공	- 호텔조리영양학부 · 호텔외식조리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 전문사관과	- 군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 · 소방안전관리전공 · 산업안전관리전공	- 소방안전관리과 · 소방안전관리전공 · 화공산업안전전공	

〈2020학년도 학과신설〉

- 경찰경호무도과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변경된 학과에 재적 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복학생의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1 전문학사 학위〉

학 과 명	학 위 명	학 과 명	학 위 명
안경광학과	보건전문학사	호텔항공서비스과	관광전문학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전문학사
응급구조과	보건전문학사	부동산과	경영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전문학사	사회복지과	복지전문학사
병원의료정보과	보건전문학사	경찰경호무도과	행정전문학사
뷰티미용과	미용전문학사	군사학과	행정전문학사
호텔조리 영양학부	호텔외식 조리전공	컴퓨터정보보안과	공업전문학사
	식품영양학 전공		
재활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전기제어과	공업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 학사	소방안전 관리과	소방안전 관리전공	공업전문 학사
			화공산업 안전전공	공업전문 학사

<별표 1-2 학사 학위>

학과명	학위명	비고
간호학과	간호학사	수업연한 4년제

<별표 1-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학 과 명	학 위 명
간호학과	간호학사
호텔조리영양학부	조리학사
세무회계학과	경영학사
컴퓨터정보보안과	공학사
전기제어과	공학사

3. (제29조의 6(원격교육강좌 학점인정) 3항 원격수업 경과조치) 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 학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교과이수단위와 졸업 및 수료 경과조치) 이 규정 제24조 제2항, 제33조 제3항의 개정학칙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0학년도 포함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 및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및 복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적용한다
- (교과이수단위 특별 경과조치) 제24조(교과이수단위) 6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암대학교총장 ○ ○ ○

학위번호 :

(별지 2)

제 호

##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암대학교총장 ○ ○ ○

(별지 3)

제 호

# 학 사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  
화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의 자  
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암대학교총장 ○ ○ ○

학위번호 :

(별지 4)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암대학교총장 ○ ○ ○

학위번호 :